

#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4.

발의자 : 김예지 · 박성민 · 정진석

이종배 · 서병수 · 김선교

김성원 · 최승재 · 이종성

지성호 · 류성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 · 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 · 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제1항제3

호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“학교생활”을 “학교생활 또는 질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